

##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120호
- 나. 발 의 자 : 최기찬 의원 외 30명
- 다. 발의일자 : 2023년 8월 14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 2. 제안이유

- 전통사찰의 지원은 상위법상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별도의 법률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전통사찰은 시대적 특색을 갖고 한국 고유의 불교 문화 예술 및 건축사와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수 있어 그 문화적 가치와 상징성을 특수하게 보유하고 있음.
- 이에 별도의 조례를 통해 전통사찰의 보수·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도시 서울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나.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문화행사, 보수·정비 등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나. 전통사찰 지원사업 현황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며, 전국 총 982개소 중 서울은 60개임<sup>1)</sup>.
- 서울시는 매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시스템 구축,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국비·시비·구비와 매칭으로 지원하고 전통사찰 시설 확충 및 정비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음.

---

1) 서울시 전통사찰은 종로구 12개, 성북구 9개, 강북구 7개, 은평구 5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 서울시 전통사찰 지원사업 현황 >

| 연번 | 사업명  | 2023년 예산             | 근거  |
|----|--|----------------------|---|
| 1  |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br>-전통사찰 보수 정비<br>(국45:시22.5구22.5:자부담10) | (x1,372)<br>2,058백만원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br>「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 2  |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br>-방재시스템 구축<br>(국45:시22.5구22.5:자부담10)   | (x120)<br>180백만원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br>「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 3  |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br>-방재시스템 유지보수<br>(국50:시25:구25)          | (x269)<br>403백만원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br>「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 4  | 전통사찰 시설확충 및<br>정비지원                                    | 4,330백만원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br>「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 다. 제정안의 필요성

- 전통사찰의 발전은 서울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수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불비함.
- 이에 전통사찰은 보존해야 할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창조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지원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사찰의 문화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 특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조례로 법규화한 타 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2곳으로 별도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례 현황 >

| 연번 | 지방자치단체 | 조례명                      |
|----|--------|--------------------------|
| 1  | 경기도    |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2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라. 주요 조문별 검토

#### (1) 목적과 시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전통사찰의 보존·관리과 활용에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대해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전통사찰 및 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사업계획의 조정 등의 업무가 시장에게 이양되어 있어 시장의 책무 신설은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함.

#### (2)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4조~안 제6조)

-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

사찰 지정의 해제,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4조).

- 또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임기 2년에 구성인원을 9명 이내 위원으로 사업계획의 심의 등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관한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 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불교문화 및 불교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 되도록 시장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
- 따라서 시장 소속의 심의·자문 기구로서의 조례상 지위가 확보되며, 역사·전통문화 분야의 전문가와 불교계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자의적인 행정 집행에 따른 민원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재 서울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기설치되어 있어 새롭게 신설하면 위원회 설치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의 조항을 포함한 전통사찰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안 제7조)

- 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전통

사찰의 보수와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정비사업 등 전통사찰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 정비 및 방재시스템 등과 관련된 사업을 기수행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사업 등 예산지원에 대한 명문화 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 마. 종합검토의견

- 제정안은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을 위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도시 서울로 나가는데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공감함.
- 다만,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내 ‘전통사찰’에 대한 정의 규정,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규정, ‘지원 대상’ 등은 중복 규정이므로 이를 정비해야 함.

의안번호  
1120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 제 안 자   | 제안일자               | 소관 상임위             |
|-----------------------|---|--------------------|--------------------|
|                       | 최기찬 의원  | 2023. 8. 14.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주요내용                  | <p><b>&lt;제정 필요성&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사찰의 지원은 상위법상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별도의 법률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음.</li> <li>○ 전통사찰은 시대적 특색을 갖고 한국 고유의 불교 문화 예술 및 건축사와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수 있어 그 문화적 가치와 상징성을 특수하게 보유하고 있음</li> <li>○ 이에 별도의 조례를 통해 전통사찰의 보수·운동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도시 서울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li> </ul> <p><b>&lt;주요 입법 요지&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li> <li>○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li> <li>○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li> </ul> |                    |                    |
| 추진경과                  | ○ 조례 제정안 발의(최기찬 의원, 2023.8.14.)   |                    |                    |
| 부 서 검토의견              |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                    |                    |
| 쟁점사항<br>(의회동향, 문제점 등) | ○ 별도 쟁점사항 없음  |                    |                    |
| 대응방안                  | ○ 별도 대응사항 없음  |                    |                    |
| 상 임 위 처리결과            |   |                    |                    |
| 향후계획                  |   |                    |                    |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팀장 김용환(☎2133-2520) | 담당 이인식(☎2133-2530) |